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개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66

발의연월일: 2024. 6. 10.

발 의 자:이개호・이정문・위성곤

어기구 · 임호선 · 조인철

문금주 · 김병기 · 박지혜

김영호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명으로 유례없는 출산율 감소로 2021년을 기준으로 72년만에 절대 인구가 줄기 시작하면서 이로인한 농어촌지역과 지방이 소멸에 직면하고 있음. 그동안 정부는 지방소멸 위기극복을 위한 다양한 정책(청년지원, 귀농귀촌, 출산지원)을 추진해 왔지만인구감소 및 수도권 집중을 막지 못한 것이 현실임.

이제는 출산율 제고, 인구유출방지라는 단순한 접근보다는 그동안 중앙정부에서 획일적으로 추진해온 지방인구감소 방지정책에서 벗어 나 위기의 당사자인 지방이 주도하면서 일시적 처방이 아닌 장기적 호흡으로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속적인 지 원과 보장이 이루어져야 함.

정부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조성하여 운용해 오고 있음. 그러나 현행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은 2031년까지 한시 적으로 운영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재원도 매년 1조원 수준에 그치고 있음.

이로인해 사업의 주체인 지자체에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할 수 없어 연례적으로 소규모 사업만 반복하고 있는 실정임.

또한 재원의 규모도 전국 지자체에 1조원 수준의 예산만 지원하고 있어 인구감소 현상이 심각한 지자체들이 충분한 대책을 수립하기에 는 역부족인 현실임.

이에 기금의 재원 규모를 2배로 확대하고 2031년까지 되어 있는 한 시성을 폐지하여 농어촌지역과 지방의 인구소멸 방지 대책을 효과적 으로 추진하기 위한 근거를 마런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1호 등).

법률 제 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정부출연금 2조원

법률 제18545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부칙 제2조제2항을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소멸대응기금의 재원에 관한 특례) 제23조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5회계 연도의 정부출연금은 1조원으로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3조(지방소멸대응기금의 재	제23조(지방소멸대응기금의 재		
원) (생 략)	원) (현행과 같음)		
1. 정부출연금 1조원	<u>1. 정부출연금 2조원</u>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